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가. 지방세법 개정('09. 2. 6)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 가액(구, 과표적용율)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, 재산세율이 종전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및 인하되어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,

나. 도시계획세는 '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세율인하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,000분의 1.5에서 1,000분의 1.4로 인하함.

4. 관련법령

○「지방세법」

5. 검토의견

□ **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□ **행정안전부(지방세운영과)에서는**

○ 지방세법 개정('09. 2. 6)으로 인하여 재산세는 세율이 인하되어 국민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반면,

※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(0.15~0.5% ⇒ 0.1~0.4%)

○ 재산세와 같이 부가되는 **「도시계획세」**는 세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세부담 완화차원에서

○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,000분의 1.5에서 1,000분의 1.4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는 **「조례개정 표준안」**을 마련하여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)이전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.

□ 결론적으로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**행정안전부의 「조례개정 표준안」**을 기준으로 개정하였고,

○ **개정조례안의 신·구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**

○ **다만,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. 1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를 하여 재산세 등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가. 2003년도에 이전한 (舊) 성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이 현재까지 방치됨으로서 도심미관 저해와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우리군이 해당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 조성과 주차장등으로 활용코자 하며,

나.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발맞추어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현재 경일교통 차고지로 사용 중에 있는 군유재산의 인접 부지 및 건물을 취득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부지 및 건물취득

1) (舊)성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

○ 위 치 :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172-4번지
○ 취득면적 : 토지 - 4,042㎡, 건물 - 2,135㎡
○ 소 유 자 : 국(관리청-경찰청, 소관부서-경찰종합학교)
○ 취득가액 : 25억 정도 추정

2)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

○ 위 치 :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67-1번지외 4필지
○ 취득면적 : 토지 - 6,178㎡, 건물 - 591㎡
○ 소 유 자 : 박원득외 2인

○ 취득가액 : 13억 정도 추정

토지소재지			지목	면적(㎡)	소유자	보상가(천원)	비 고 (㎡/공시지가/추정액)
읍	리	지번					
계		5필지		6,178		1,292,972	
성주	성산	67-1	잡종지	962	박원득	179,894	㎡/65,800/187,000
		67-4	공장용지	1,142	박원득	251,240	㎡/72,800/220,000
		68-2	전	154	백수길	28,798	'08.7.18 지목이(도로→전) 변경되어 '09년도부터 산정
		68-5	답	1,015	이형숙	189,805	㎡/53,400/187,000
		68-25	전	2,905	이형숙	543,235	㎡/62,500/187,000
건축물		67-4	건물	495	박원득	100,000	철근콘크리트
		67-1	건물	96	박원득		경량철골조(조립식)

나. 향후 추진계획

1) (舊)성주경찰서

○ (舊)성주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소공원 조성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등으로 활용코자 함.

※ 본 재산은 경찰종합학교에 편입되는 아산 시유지와 경찰청간에 교환 협약된 재산으로 교환이 완료되면 우리군에서는 아산시로부터 매입하여야 함.

2)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

○ 위 치 : 성주읍 성산리 67-1번지 외4필지【부지면적 6,178㎡(1,868평)】

○ 규 모 : 종합사회복지관 1동 신축
【건물 2,808㎡(850평)이상, 지하1층 ~ 지상3층】

○ 사업기간 : 2009년 ~ 2011년 (3년)

○ 사업내용 : 장애인복지관련시설, 아동청소년복지관련시설,
자활센터, 자원봉사센터, 지역주민이용시설 등

○ 사 업 비 : 60억(국비20억, 도비10억, 군비30억)정도

○ 건축내용

건물 위치	층수	구 조	연면적(㎡)	용 도	비 고
성주읍 성산리 67-1번지 외4필	계	1 동	2,808		성주군 종합사회 복지관
	지하	철근콘크리트 스 라 브	330	전기 / 기계실	
	1 층	〃	826	장 애 인 복지 관 련 시 설	
	2 층	〃	826	아동·청소년 복 지 시 설	
	3 층	〃	826	지역 자활센터, 자원봉사센터등	

4. 기대효과

가. (舊)성주경찰서를 매입하여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으로 쾌적한 도심지 환경 정비 및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

나.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보편적·포괄적 욕구에 적정 대처

다. 복합 건물내 복지서비스의 상호 연계 제공으로 시너지 극대화

라. 복지시설 복합건물화로 건물 신축비 및 연간 운영비 절감

5. 근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

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

다.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

붙 임 :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.

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

□ 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(당초)			하 반 기(변경)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36 26	29,781 2218.8	665,997 276,096	6 8	10,220 2,726	3,192,972 600,000	42 34	40,001 4,944.8	3,858,969 876,096	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36 26	29,781 2218.8	665,997 276,096	6 8	10,220 2,726	3,192,972 600,000	42 34	40,001 4,944.8	3,858,969 876,096	
	2.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4.매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5.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교환으로 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7.기타 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계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□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재산표시			취득대상수량	과표또는평가액(추정)	취득시기	취득사유	비고
	구분	소재지	일단의수량					
1.	토지	성주 경산172-4	4,042	4,042	2,000,000	2009 하반기	(舊)성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(주차장,소공원)	
2.	〃	성주 성산 67-1	962	962	179,894	〃	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부지매입	
3.	〃	성주 성산 67-4	1,142	1,142	251,240	〃	〃	
4.	〃	성주 성산 68-2	154	154	28,798	〃	〃	
5.	〃	성주 성산 68-5	1,015	1,015	189,805	〃	〃	
6.	〃	성주 성산68-25	2,905	2,905	543,235	〃	〃	
7.	건물	성주 경산172-4	2,135	2,135	500,000	〃	〃	
8.	〃	성주 성산 67-4	495	495	100,000	〃	〃	
9.	〃	성주 성산 67-1	96	96		〃	〃	
계	토지		10,220	10,220	3,192,972			
	건물		2,726	2,726	600,000			
	기타							

□ **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는**

○ “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
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**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**

□ **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금번에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**

○ (舊) 성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취득과

○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예정지의 부지 및 건물취득을 위하여 「**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**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**금번에 제출된 「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」은 그동안 우리군의 숙원사업으로서**

○ 2003년도에 이전한 (舊)성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이 현재까지 방치됨으로서 도심미관 저해와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

■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으로 쾌적한 도심지 환경정비와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,

○ 현재 경일교통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의 인접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

■ 기존의 군유지와 취득할 부지에 우리군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효율적이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해,

○ **상기 재산(토지 및 건물)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.**

□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으로서는 재산취득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확보(국·도비)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,

□ 아울러 현재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일교통 차고지의 이전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

□ 또한, 사유재산 매입은 보상문제 등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